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52137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변론 종결 2015. 12. 24.

판결 선고 2016. 1. 2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093,580원 및 그중 387,052,07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1.항 및 2.항 부분).

나. 적용법조

- 1)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2015. 11. 11.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자신과 피고 D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다룰 뿐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다).
- 2) 피고 B,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 A은 운송 및 통관 알선업, 창고보관, 야적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은 2011. 4.경 피고 A에 입사하여 직원으로서 보세창고 부분 관장 업무를 담당하고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역할을 해 왔다.

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3. 1. 24. 설립되었는데, 대표이사가 피고 D이다.

2)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평택시 F 임야 6,232㎡ 및 위 G 전 2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3. 7. 피고 D 명의로 2012. 2.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거래가액은 위 F 임야의 경우 9억 3,000만 원, 위 위 G 토지의 경우 3,000만 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D은 2012. 3. 7.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9억 6,000만 원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7. 근저당권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0억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3)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가) 원고는 2012. 5. 31.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신용보증원금: 4억 원(이후 3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② 신용보증기간: 2012. 5. 31.부터 2013. 5. 30.까지(이후 2014. 11. 28.로 변경되었다)

③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장에 보증금액 4억 원,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기한 2013. 5. 30., 대출예정금액 5억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H)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5. 31. 위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1. 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 피고 A의 채무 중 보증범위 내에서 원금 3억 8,000만 원, 이자 7,052,070원의 합계 387,052,0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피고 A이 그 매수자금 등을 부담한 실질적 매수인이다. 피고 A은 세금 관련 문제 등을 회피하고자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이 매수인이 되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 D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위 I, J, K, L은 선의의 매도인에 해당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A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자신이 대출받은 금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A의 채권자로서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7, 9호증, 을 제6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① 피고 D은 피고 A의 직원이었고 그가 설립한 E는 피고 A과 동일한 주소지에 소재하고 있다. ② 피고 B은 피고 A과 E 모두의 사내이사이다. ③ 2012. 1. 30.경 피고 A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피고 A의 신규보세창고를 신축할 예정이고 이를 피고 A의 창고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④ 피고 D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를 대출받을 당시 피고 A의 직원 M, N 및 피고 A의 대표이사 O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과 피고 D이 설립한 E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고 D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수자금 중 상당 부분인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D이 위 대출채무의 명의자로서 그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10억 7,8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② 피고 D은 피고 A의 직원이었으나 직접 투자를 하거나 외부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공동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 중 나머지 부분은 피고 D이 P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A에 송금했던 금원을 B 등으로부터 다시 송금받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③ 보세창고 사업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D이 2013. 1. 24. E를 설립하여 보세창고 사업부분을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A과 E의 대표이사가 각각 O와 피고 D으로 다르고, 위 두 회사의 주소지에 총마다 다른 회사들도 존재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소지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시기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이전으로서 피고 A, D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

판사윤남현

판사진영현

별지